







보도참고자료

배 포	일	2020. 4. 9. / (총 3매)	담당부서	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
팀	장	정 영 기	│ - 전 화	044-202-3595
담 당	자	최 경 순 / 송 정 아	기신 와	044-202-3596 / 3598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손실보상 개산급 146개 병원에 1.020억 원 지급

- 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,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)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(공동위원장: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),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4월 9일(목) 146개 의료기관에 1,020억 원을 개산급*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.
 - * 개산급: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
 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**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**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- □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여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(104개소)*과 정부·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 (53개소)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,
 - *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, 감염병 전담병원 등











○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**환자**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.

			폐쇄·업무정지			
구분	계	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	감염병 전담병원	중증환자 치료병원	병원	
기관 수	146*	26	68	50	53	
금액(억 원)	1,020	305	743	509	183	

* 유형이 중복되는 기관을 1개 기관으로 표기

□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(47개) 32.2%, 1억 초과~5억 원 이하(37개) 25.3%, 5억 초과~10억 원 이하(24개) 16.4%, 10억 초과~30억 원 이하(32개) 21.9%, 30억 초과~50억 원 이하(5개) 3.4%, 50억 원 초과(1개) 0.7%이다.

구분	계	1억 이하	1~5억	5~10억	10~30억	30~50억	50억 이상
기관수	146	47	37	24	32	5	1
%	100	32.2	25.3	16.4	21.9	3.4	0.7

- □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"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"고 전했다.
 - 아울러 "손실보상 대상,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, 약국,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< 붙임 > 제 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













붙임

제 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

연번	구 분	성명	주요 경력
1	공동위원장	김강립	○ 보건복지부 차관
2	공동위원장	임태환	○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○ 전(前)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
3	임명직 (위원회 간사)	배금주	○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
4	위촉직	김정하	○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
5	위촉직	송재찬	○ 대한병원협회 부회장
6	위촉직	좌석훈	○ 대한약사회 부회장
7	위촉직	한민경	○ 대한간호협회 정책 전문위원
8	위촉직	한원곤	○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
9	위촉직	강희정	○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
10	위촉직	강청희	○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
11	위촉직	기모란	○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 ○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교수
12	위촉직	정해남	○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○ 전(前) 헌법재판소 사무차장
13	위촉직	최상철	○ 정부법무공단 변호사○ 전(前)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
14	위촉직	홍 철	○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





